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정도를 고려한 특수학급
교육환경 조성〉
■ 김재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954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정도를 고려한 특수학급 교육환경 구성	2
2. 개정안 부칙	9
※ 참고자료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재섭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6. 7. 15.

3. 회 부 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학교의 장이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학급의 설치 및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기준과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별 여건에 따라 창고나 유희공간 등을 특수학급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동과 안전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급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일반학교의 장이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는 등 적절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별 교육환경의 편차를 완화하고 특수교육대상자가 균등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정도를 고려한 특수학급 교육 환경 조성(안 제21조제5항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현행법은 일반학교의 장이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법 제21조제4항).
- 개정안은 ① 제4항에서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구비 의무를 분리하여 제5항으로 이관하고, ② 그 의무의 발생요건을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서 "제4항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변경하며, ③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안전성·접근성 확보 등 적절한 교육환경 조성을 고려요소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제5항 신설, 현행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통합교육) ① ~ ③ (생략)	제21조(통합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일반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	④ ----- -----

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u>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u> <u><신 설></u> ⑤ (생 략)	----- -----<u>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⑤ <u>일반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는 등 적절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u>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 현행 시행령이 특수학급의 시설·설비 요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요소로 두고 있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현행 시행령은 특수학급의 시설·설비 요건으로 교내 이동의 용이성, 세면장·화장실 등과의 근접성 및 교실 면적(66제곱미터 이상,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만을 정하고 있을 뿐, 특수교육대

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는 고려요소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¹⁾).

따라서 위 요건에 미달하는 장소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 위반으로서 지도·감독²⁾을 통한 시정이 가능하나,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비추어 안전성 확보가 미흡한 경우에 대하여는 현행 규율에 공백이 있는바, 이 부분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첫째,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구비의무의 적용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하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①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②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③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야 함³⁾.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 ①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2)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즉,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급에 배치하는 방식과 특수학급에 배치하는 방식 두 가지로 이루어지며, 이 중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이 "통합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이 '특수학급'임.

현행법은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구비의무의 발생요건을 특수학급 설치 여부가 아닌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고⁴⁾,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역시 두 개 항 모두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⁵⁾.

이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

11의2. "통합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말한다.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제28조에 따른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일반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 ①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

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기구 등 교재·교구를 갖추 의무는 특수학급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 전반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특수학급 없이 일반학급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교에도 미침.

그러나 개정안은 위 의무를 제5항으로 이관하면서 그 발생요건을 "제4항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하고 있으나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대하여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구비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현행보다 적용범위가 축소되고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가 규율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음.

개정안의 취지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환경 편차 완화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용범위가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법률로 규정할 사항인지 하위법령으로 정할 사항인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제5항 역시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행 제4항과 규범형식이 동일한바, 실제 규범내용은 시행령 개정 여부에 따라 결정됨.

따라서 앞서 본 규율 공백은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고려요소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추가하는 방법으로도 해소가 가능한

측면이 있으며, 이미 교재·교구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이 동일한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음.

다만,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은 통합교육 환경 조성의 기준을 입법자가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어느 방식이 적절한지는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계획 등을 확인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특수학급 신·증설이 위축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수학급 설치 기준은 학교장의 재량사항이 아니라 법 제27조의 기준⁶⁾에 따른 법정의무이나, 시설·설비 기준이 신설될 경우 학교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어 특수학급 신·증설 협의가 지연되는 등 통합교육 확대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음.

특히 법령상 학급 설치 기준이 되는 학급당 학생 수를 초과하는 특수학급이 다수 있는 상황⁷⁾에서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1~2개 내외로 설치되어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가 함께 배치되고 있는 현실을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참고]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및 특수학급 운영 현황

고려할 때, 장애 유형·정도별 시설·설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실제 운영상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학교 자체 예산·인력만으로는 개정안이 요구하는 환경을 갖추 데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관 의견 제출]

<교육부> : 신중검토

-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법령으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교육환경 조성 의무가 이미 규율되고 있고, 개정안으로 추가되는 실질적인 규율 내용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과 입법적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시·도교육청> 5개 교육청(신중검토/일부수정)

- (서울, 대구, 충북: 신중검토) 특수학급 과밀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과도한 기준을 법령에 규정할 경우 학교장이 특수학급 신·증설에 더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행 제4항으로도 개정 취지 반영이 가능하므로 별도 조문 신설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강원, 전북: 일부 수정) 학교 자체 예산·인력만으로는 개정안이 요구하는 환경을 갖추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우선된 이후 공간 계획·시설 공사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보장하는 보완 규정이 필요함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

개 정 안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기존 특수학급에 대한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개정안은 대통령령 위임 및 의무규정을 두고 있어 하위법령 정비와 학교 현장의 준비기간이 필요한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적절함.
- ☐ 이미 설치·운영 중인 특수학급에 대한 적용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신규 설치 특수학급부터 적용하는 적용례를 두거나 기존 특수학급에 대하여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86

참고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및 특수학급 운영 현황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급 배치 현황]

(2026. 4. 1. 기준, 단위: 명·학급수)

구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일제 통합학급)		
특수교육대상자	31,993	72,784	19,202	216	124,195
학급	5,836	15,426	18,255	68	39,585

※ 자료: 교육부, 「2026 특수교육통계」

[최근 3년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정원초과학급 현황]

(단위: 학급, %)

2024(4.1.기준)			2025(9.1.기준)			2026(3.1.기준)		
전체 학급	정원초과 학급	비율	전체 학급	정원초과 학급	비율	전체 학급	정원초과 학급	비율
18,552	1,882	10.1	19,253	1,808	9.4	19,866	1,540	7.8

※ 정원초과학급: 학급당 학생 수가 법 제27조제1항의 기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초과하는 학급

※ 자료: 시도교육청 제출자료(순회학급, 전공과 학급 제외)